

전파법 일부개정법률안 (박충권의원 대표발의)

의안 번호	15001
----------	-------

발의연월일 : 2025. 12. 8.

발 의 자 : 박충권 · 유상범 · 박준태
이상희 · 이달희 · 박정훈
이인선 · 김태호 · 김성원
김 건 · 우재준 · 권영진
김장겸 · 이만희 · 윤재옥
의원(15인)

제안이유

최근 탄소중립 사회 실현을 위해 해상풍력발전 등 신재생에너지 보급이 확대됨에 따라 대형 풍력발전기 등 고층·대형 시설물의 설치가 급증하고 있음. 그러나 이러한 대형 시설물은 군 레이더, 항공 레이더, 해상통신망 등의 전파 경로를 차단하거나 반사하여 전파 환경에 심각한 간섭을 유발할 우려가 있음.

현재 대형 시설물의 설치와 관련된 인허가 과정에서는 「환경영향평가법」에 따른 환경영향평가 및 「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」에 따른 군 작전성 검토 등을 통해 전파 영향에 대한 평가를 받도록 하고 있음. 이로 인해 발전사업 허가 이후 단계에서 뒤늦게 전파 간섭 문제가 불거져 사업계획이 전면 수정되거나 무산되는 사례가 발생하는 등 사업자의 예측 가능성이 저하되고 막대한 경제적 비용이 낭비

되고 있음.

이에 전파환경영향평가 제도를 신설하여 해상풍력발전시설 등 전파 환경에 영향을 미칠 우려가 큰 시설물을 설치하려는 자로 하여금 사전에 전파 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·평가하도록 하고,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이에 대한 개선 조치를 요구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, 사업자의 예측 가능성을 제고하려는 것임.

주요내용

- 가. 해상풍력발전시설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물을 설치하려는 자는 해당 시설물이 전파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평가하는 전파환경영향평가를 실시하도록 하고,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평가서 검토 결과 필요한 경우 사업자에게 사업계획의 조정·보완을 통보하도록 함(안 제49조의2제1항부터 제4항까지 신설).
- 나. 「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」에 따른 협의나 「환경영향평가법」에 따른 환경영향평가 등 타 법령에 따라 전파 환경에 미치는 영향이 이미 검토된 경우에는 이 법에 따른 평가를 받은 것으로 보아 불필요한 중복 절차를 방지함(안 제49조의2제5항 신설).
- 다. 평가의 전문성과 신뢰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지정하는 자로 하여금 전파환경영향평가 업무를 대행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함(안 제49조의3 신설).

전파법 일부개정법률안

전파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49조의2 및 제49조의3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제49조의2(전파환경영향평가) ① 「해상풍력 보급 촉진 및 산업 육성에 관한 특별법」 제2조제2호에 따른 해상풍력발전시설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물을 설치하려는 자는 해당 시설물이 전파환경에 미치는 영향 등을 평가하는 전파환경영향평가(이하 “전파환경영향평가”라 한다)를 실시하여야 한다.

② 제1항에 따른 시설물을 설치하려는 자가 전파환경영향평가의 실시대상 사업 또는 사업계획(이하 “사업계획등”이라 한다)에 대한 승인·인가·허가 또는 지정 등(이하 “승인등”이라 한다)을 받아야 하는 경우에는 그 승인등을 신청하기 전에 미리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기까지 전파환경영향을 평가한 결과서(이하 “전파환경영향평가서”라 한다)를 제출하여야 한다.

③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전파환경영향평가서의 검토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련 전문기관 또는 전문가의 의견을 들을 수 있으며, 전파 관련 분야의 전문성을 보유한 기관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의 장에게 검토를 대행하게 하거나 소속 전문가의 파견

또는 그 밖의 필요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.

④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전파환경영향평가서를 검토한 결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(이하 “개선필요사항등”이라 한다)이 있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1항에 따른 시설물을 설치하려는 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.

1. 전파환경영향평가서의 개선이 필요한 사항
2. 사업계획등의 조정·보완이 필요한 사항
3. 그 밖에 해당 사업의 시행에 따른 전파의 혼신·간섭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

⑤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협의·결정을 완료한 경우로서 해당 협의·결정 내용에 전파환경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분석이 포함된 경우에는 전파환경영향평가를 받은 것으로 본다.

1. 「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」 제13조에 따른 행정기관의 처분에 관한 협의
2. 「공항시설법」 제34조에 따른 항공학적 검토 결과에 대한 결정
3. 「환경영향평가법」에 따른 환경영향평가등의 협의
4. 그 밖에 이 법 또는 다른 법령에 따라 전파환경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분석한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

⑥ 전파환경영향평가의 구체적인 기준 및 방법, 전파환경영향평가서의 제출 방법, 개선필요사항등의 통보 절차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

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.

제49조의3(전파환경영향평가의 대행) ① 제49조의2제1항에 따른 시설물을 설치하려는 자는 전파환경영향평가를 실시하거나 변경할 때에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정한 자에게 이를 대행하게 할 수 있다.

②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대행자를 지정한 경우에는 이를 공고하여야 한다.

③ 제1항에 따른 대행자의 지정 기준 및 절차,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.

부 칙

제1조(시행일)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제2조(전파환경영향평가에 관한 적용례) 제49조의2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전파환경영향평가의 대상이 되는 시설물을 설치하려는 경우부터 적용한다.

신 · 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<u><신 설></u>	<u>제49조의2(전파환경영향평가) ①</u> <u>「해상풍력 보급 촉진 및 산업</u> <u>육성에 관한 특별법」 제2조제</u> <u>2호에 따른 해상풍력발전시설</u> <u>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</u> <u>물을 설치하려는 자는 해당 시</u> <u>설물이 전파환경에 미치는 영</u> <u>향 등을 평가하는 전파환경영</u> <u>향평가(이하 “전파환경영향평</u> <u>가”라 한다)를 실시하여야 한</u> <u>다.</u> <u>② 제1항에 따른 시설물을 설</u> <u>치하려는 자가 전파환경영향평</u> <u>가의 실시대상 사업 또는 사업</u> <u>계획(이하 “사업계획등”이라 한</u> <u>다)에 대한 승인·인가·허가</u> <u>또는 지정 등(이하 “승인등”이</u> <u>라 한다)을 받아야 하는 경우</u> <u>에는 그 승인등을 신청하기 전</u> <u>에 미리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</u> <u>관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</u> <u>시기까지 전파환경영향을 평가</u> <u>한 결과서(이하 “전파환경영향</u>

평가서”라 한다)를 제출하여야 한다.

③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전파환경영향평가서의 검토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련 전문기관 또는 전문가의 의견을 들을 수 있으며, 전파 관련 분야의 전문성을 보유한 기관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의 장에게 검토를 대행하게 하거나 소속 전문가의 파견 또는 그 밖의 필요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.

④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전파환경영향평가서를 검토한 결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(이하 “개선 필요사항등”이라 한다)이 있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1항에 따른 시설물을 설치하려는 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.

1. 전파환경영향평가서의 개선이 필요한 사항
2. 사업계획등의 조정·보완이 필요한 사항

3. 그 밖에 해당 사업의 시행에 따른 전파의 혼신·간섭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

⑤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협의·결정을 완료한 경우로서 해당 협의·결정 내용에 전파 환경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분석이 포함된 경우에는 전파환경영향평가를 받은 것으로 본다.

1. 「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」 제13조에 따른 행정기관의 처분에 관한 협의

2. 「공항시설법」 제34조에 따른 항공학적 검토 결과에 대한 결정

3. 「환경영향평가법」에 따른 환경영향평가등의 협의

4. 그 밖에 이 법 또는 다른 법령에 따라 전파환경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분석한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

⑥ 전파환경영향평가의 구체적인 기준 및 방법, 전파환경영향평가서의 제출 방법, 개선필요

<신 설>

사항등의 통보 절차 및 그 밖
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
로 정한다.

제49조의3(전파환경영향평가의
대행) ① 제49조의2제1항에 따
른 시설물을 설치하려는 자는
전파환경영향평가를 실시하거
나 변경할 때에 과학기술정보
통신부장관이 대통령령으로 정
하는 바에 따라 지정한 자에게
이를 대행하게 할 수 있다.

②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
제1항에 따른 대행자를 지정한
경우에는 이를 공고하여야 한
다.

③ 제1항에 따른 대행자의 지
정 기준 및 절차, 그 밖에 필요
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
다.